

의안번호	2123546
의 퇴 인	김진표의원
회 답 일	2023.08.18.
추 계 번호	23D3361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장학금등·건축비·인건비등·사업비의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92억 7,400만원, 2029년에 61억 4,5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563억 3,700만원(연평균 112억 6,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평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의 설치 등 (안 제2조 등)	19,274	19,279	5,585	6,054	6,145	56,337	11,267

- 주: 1. 본 추계 결과는 국방부와 한국과학기술원 간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실제 교육과정 공동 운영 여부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2. 실제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입학정원 규모에 따라 장학금등·건축비·인건비등·사업비등의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설치)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둔	의무규정
2	안 제5조(교육과정)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의무규정
3	안 제6조(기초군사훈련)	학사학위과정 또는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7조(학위 수여)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보고, 석사·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함	의무규정
5	안 제8조(교육과정 공동 운영)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의 고도화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0조(의무복무)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11조(교장 등의 임명)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장성급 교장을 두고,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	의무규정
8	안 제13조(전역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역한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설치)	○	—
2	안 제5조(교육과정)	○	—
3	안 제6조(기초군사훈련)	×	— 실시 중 현재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학군·학사 장교 등을 대상으로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초군사훈련에 대한 소요비용은 육군학생군사학교의 교육비 및 운영비 등 기존 예산에서 충당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여 본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4	안 제7조(학위 수여)	○	—
5	안 제8조(교육과정 공동 운영)	○	—
6	안 제10조(의무복무)	×	— 현재 과학기술전문사관의 의무복무 기간 인건비는 국방비 인건비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인건비는 국방부에서 편성된 인건비에서 지출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7	안 제11조(교장 등의 임명)	×	— 교육과정을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미 실시
8	안 제13조(전역자에 대한 지원)	×	— 실시 중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국방전직교육원이 창업지원프로젝트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추계기간 5년 동안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안 제8조¹⁾ 및 부칙 제2조²⁾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관련 비용을 추계함
 - 안 제11조제3항은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을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별도의 교수 등의 인건비는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다만, 공동운영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수 인력 소요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 정확한 학생규모 및 교과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력을 두는 것으로 가정함
- 앞서 가정한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한국과학기술원에 강의실, 연구실 및 기숙사 등의 증축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교육부 「2024년 국립학교 시설예산 편성 기준단가」를 반영하되,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3. 3.)한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추계함
-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³⁾를 운영중에 있으므로 장학금등 관련 비용 추계 시 반영함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전문사관(연간 25명 선발)에게 이공계

1) 안 제8조(교육과정 공동 운영)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교육과정(군사학과정은 제외한다)을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한국과학기술원”이라 함)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학위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 안 부칙 제2조(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 등을 위한 준비행위)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설치와 교육과정의 공동 운영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3) 전국 4년제 대학 이공계 학사과정 4~5학기 재적생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3단계 전형을 거쳐 연 25명 규모의 후보생을 선발하는데, 선발자에게는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재원을 활용하여 등록금 전액 및 전문역량개발비 연 500만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며 임관 전 일반전공 외 국방과학기술·창업·현장실습 교육을 받고, 임관 후에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18주간 보수교육을 받음
학사과정을 졸업한 후에는 임관 종합평가를 거쳐 소위로 임관하게 되며, ADD 등에서 3년간 연구개발 임무를 수행함(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외국 입법·정책 분석,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와 시사점’)

우수국가장학금(2년)과 전문역량개발비(연 500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학생들의 장학금과 전문역량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은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학생 정원 규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과학기술전문사관 선발규모를 고려하여, 학사학위과정 정원은 30명, 석사학위과정 30명, 박사학위과정 30명 등 매년 90명의 입학정원이 있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7조에 따라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석·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각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에 모두 졸업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군인의 정원은 중기부대계획(2023~2027년)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군인 정원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인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는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사학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방부는 국방대학교 및 각군대학 등에서 안보과정 등을 운영 중에 있으므로 기존 예산⁴⁾ 및 인력 범위에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여 본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안 제10조에 따라 장교로 임용된 사람이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의무복무기간 동안의 인건비는 국방부에서 편성된 인건비에서 지출하게 되므로 별도의 예산소요는 없는 것으로 간주함⁵⁾

□ 안 제6조는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학생에 대하여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학군·학사 장교 등을 대상으로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초군사훈련에 대한 소요비용은 육군학생군사학교의 교육비 및 운영비 등 기

4) 2023년 국방부 군사대학교육(2432-301) 예산으로 117억 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5) 현재 과학기술전문사관의 의무복무 기간 인건비는 국방부 인건비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음

준 예산⁶⁾에서 충당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여 본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안 제13조는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 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국방전직교육원이 창업지원프로젝트 사업 등을 수행⁷⁾하고 있고, 추계기간 5년 동안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⁸⁾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는 학생들의 장학금등, 한국과학기술원 내 증축을 위한 건축비, 학생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등을 추계함

가. 장학금등

- 현재 과학기술전문사관에게 장학금(등록금 전액)과 전문역량개발비(연 500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한국과학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학기당 등록금은 학사과정 343만 3,000원, 석사·박사 과정 각각 955만 9,000원임⁹⁾

6) 2023년 예산기준 간부양성교육(2431-302)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관후보생교육 사업 예산은 13억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관련 예산으로 기본급식비(1231-301) 1조 7,334억 8,500만원, 기본피복(1241-301) 3,748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7) 2023년 국방전직교육원(기타 공공기관) 예산은 전직지원교육 38억 2,200만원, 일자리지원사업 66억 2,200만원, 창업지원프로젝트 16억 4,700만원, 기관운영 35억 5,000만원 등 총 156억 4,100만원이 편성됨

8) 최소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 4년, 의무복무기간 4년 등 8년이 지나야 전역을 할 수 있으므로 본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스쿨 사업'의 2023년 예산은 29억 4,700만원으로, 이 중 기본교육비는 21억 6,300만원이며, 창업교육을 위해 1인당 103만원이 편성됨

9) 한국과학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별도의 입학금은 없음

[표 2]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학생 1인당 장학금등 추정

(단위: 천원)

	학사	석사	박사
연 수업료(A) (학기당 수업료×2)	6,866	19,118	19,118
전문역량개발비(B)	5,000	5,000	5,000
소계	11,866	24,118	24,11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기술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장학금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3.3.)한 소비자물가상승률¹⁰⁾을 적용하고, 전문역량개발비는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면 다음 표와 같음
- － 학사과정 학생은 4년의 수업연한에 모두 졸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석사·박사학위과정 학생은 2년의 수업연한에 모두 졸업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2025년에는 학사과정 학생 30명, 석사·박사과정 학생은 60명이 되고, 2029년에는 학사과정 학생 120명, 석사·박사과정 학생 120명이 됨

[표 3]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장학금등 추정: 2025~2029년

(단위: 천원,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학사 과정	등록금(A)	7,221	7,394	7,542	7,693	7,846
	인원(B)	30	60	90	120	120
	전문 역량개발비 (C=500만원×B)	150,000	300,000	450,000	600,000	600,000
	소계 (A×B)+C	366,630	743,640	1,128,780	1,523,160	1,541,520
석사 · 박사 과정	등록금(A)	20,105	20,528	20,938	21,357	21,784
	인원(B)	60	120	120	120	120
	전문 역량개발비 (C=500만원×B)	3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소계 (A×B)+C	1,506,300	3,063,336	3,112,560	3,162,840	3,214,08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기술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0)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4년 2.7%, 2025년 2.4%, 2026년 2.1%, 2027년 이후부터는 2.0%임

- 추계기간 동안 장학금등의 재정소요는 2025년 18억 7,300만원, 2029년에는 47억 5,6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표 4]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장학금등 추정: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장학금등	1,873	3,807	4,241	4,686	4,75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건축비등

- 국방부와 한국과학기술원이 학위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 한국과학기술원의 강의실, 기숙사 등의 증축을 위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및 비품비를 추계함
- 본 추계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건물동 설치보다는 기존 건물에 증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필요 증축면적을 산출함¹¹⁾
- (증축면적) 한국과학기술원 자료에 따라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재학생 규모와 유사한 학과 규모¹²⁾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강의실등 및 기숙사의 규모를 산출함
- 강의실 457m², 사무실 108m², 회의실 152m², 연구실 3,374m² 등 필요 증축면적은 4,091m²인 것으로 산출됨

[표 5] 한국과학기술원 내 강의실 등 증축 연면적

	개수	연면적(m ²)	비 고
강의실	8	457	
사무실	2	108	
회의실	3	152	실험실 포함
연구실	66	3,374	
합 계	79	4,091	

자료: 한국과학기술원

- 11) 참고로, 교육부 「2024년 국립학교 시설예산 편성 기준단가」의 신축과 증축의 기준 단가는 동일하므로, 한국과학기술원 부지 내에 신축을 한다면 증축비용과 동일하게 산출될 것임
- 12)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사, 석·박사과정 학생이 약 300명이므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및 연구실 규모를 반영함

- 기숙사는 학사, 석·박사과정 최대 인원(각 120명)을 가정하되, 석·박사 과정 학생은 1인실, 학사과정 학생은 2인실로 가정하여, 전용면적 3,087㎡, 공용면적 2,164㎡ 등 필요 증축면적은 5,251㎡인 것으로 산출됨

[표 6]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기숙사 증축 면적

		개수	실 면적(㎡)	총 면적(㎡)	비고
전용면적	1인실	120	14.76	1771.2	석·박사 120명
	2인실	60	21.93	1315.8	학사 120명
	소 계	240	-	3,087	-
공용면적	소 계	5	432.8	2,164	세탁소, 휴게실 등
합 계		245	-	5,251	

자료: 한국과학기술원

- (공사비) 교육부 「2024년 국립학교 시설예산 편성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강의실등의 경우 자연계교육 단가(2,879천원/㎡),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 단가(2,984천원/㎡)를 적용하되, 동 단가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비주거용건물) 연평균 증가율 5.17%¹³⁾를 반영하여 공사비 단가를 구함

- (강의실등 공사비) 단가 3,028(천원/㎡) × 4,091㎡ = 123억 8,755만원
- (기숙사 공사비) 단가 3,138(천원/㎡) × 5,251㎡ = 164억 7,764만원
- 공사비는 건축기간인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0%씩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설계비 등) 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경비는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건축부문 요율 제2종(보통) 중급을 적용하여 산출함

- 공사비 100~200억원 사이 구간에서 공사비를 기준으로 직선보간법¹⁴⁾을 이용하여 산출함

1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건설공사비지수: 2015~2023

(건설공사비지수: 매년 3월 기준, 2015년=10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주거용건물	100.13	100.41	106.14	110.42	115.65	117.05	125.31	143.03	149.88

14) 직선보간법 계산식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 x: 당해금액, x1: 큰금액, x2: 작은금액, y: 당해공사비요율, y1: 작은금액요율, y2: 큰금액요율

- (강의실등) 설계비 4.19%, 감리비 1.03%, 시설부대경비 0.24%를 적용하여 추정함
- (기숙사) 설계비 4.14%, 감리비 1.02%, 시설부대경비 0.23%를 적용하여 추정함
- 설계비는 2025년에만 발생하며, 감리비는 및 시설부대경비는 건축기간 (2025~2026년) 동안 50%씩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비품비) 교육부 「2024년 국립학교 시설예산 편성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강의실등의 경우 이공학계열 기준단가(56천원/㎡),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 단가(85천원/㎡)를 적용하되, 동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비품비를 구함

- (강의실등 공사비) 단가 57,344원/㎡ × 4,091㎡ = 2억 3,500만원
- (기숙사 공사비) 단가 87,040원/㎡ × 5,251㎡ = 4억 5,700만원
- 비품비는 2025년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함

□ 추계기간 동안 건축비등의 재정소요는 2025~2029년까지 총 311억 2,300만원으로 추정됨

[표 7] 건축비등 추정: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강의실등	공사비	6,194	6,194	-	-	-	12,388
	설계비	519	-	-	-	-	519
	감리비	64	64	-	-	-	128
	시설부대비	15	15	-	-	-	30
	비품비	235	-	-	-	-	235
	소계	7,027	6,273	-	-	-	13,300
기숙사	공사비	8,239	8,239	-	-	-	16,478
	설계비	682	-	-	-	-	682
	감리비	84	84	-	-	-	168
	시설부대비	19	19	-	-	-	38
	비품비	457	-	-	-	-	457
	소계	9,481	8,342	-	-	-	17,823
합 계		16,508	14,615	-	-	-	31,1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관리인력 인건비등

□ 본 추계에서는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10명으로 가정하되, 이 중 5명은 군인으로 배치하고, 5명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현재 과학기술전문사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관리인력 4명이 배치되었으나 이는 최소 규모의 관리 인력으로 동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관리 인력을 10명으로 가정함¹⁵⁾
- 군인의 정원은 부대중기계획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 정원 증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되 관리인력 중 군인의 경우 국방부 내부인력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5명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신규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인건비등을 추계함

□ 관리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등은 공무원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임

- 관리인력 5명에 대한 직급배분은 실무 관리자급 5급 1명, 6급이하 4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함
 - － 「국방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에 6급이하 공무원¹⁶⁾의 비중을 고려하여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함
- 관리인력의 공무원 보수¹⁷⁾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3년 3월)한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반영하고, 기관부담금과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3년 3월)한 기관부담금 비율, 공무원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하며, 기본경비는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8%¹⁸⁾)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음
 - － 공무원 보수는 기본연봉 및 봉급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 평균

15) 학사과정 학생 120명, 석·박사과정 학생 120명 등 240명을 관리 인력 10명이 관리하게 되면 1인당 24명을 관리하게 됨

16) 국방부 공무원 정원 중 관리운영직군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은 304명으로 이 중 6급이 164명(54%), 7급이 75명(25%), 8급이 55명(18%), 9급 10명(3%)임

17) 5급은 봉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6~8급은 봉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수당을 포함한 금액임

18) 국방부의 경우 군인, 군무원 및 공무원의 인건비가 구분되어 있으나 기본경비는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타 부처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인 8%를 가정하여 추계함

- 상승률¹⁹⁾을 적용하고, 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기관부담금(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무원 보수에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²⁰⁾을 적용하여 산출함
 - 자산취득비는 2025년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관리인력 10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3년 3월)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단가²¹⁾를 곱하여 산출함

[표 8] 관리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등: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보수	310	313	316	319	321	1,579
기관부담금	41	41	42	43	43	210
기본경비	25	25	26	26	26	128
자산취득비	49	—	—	—	—	49
합계	425	379	384	388	390	1,96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사업비등

- 현재 과학기술전문사관 모집 선발 및 교육훈련 과정 운영비로 4억 4,470만원²²⁾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동 금액을 사업비로 가정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3년 3월)한 소비자물가상승률²³⁾을 적용하여 추계하면 다음 표와 같음
- 그 밖에 한국과학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비용이 1인실의 경우 월 20만원, 2인실의 경우 10만원이 소요되므로 기숙사 비용을 포함하여 추계함²⁴⁾

19) 2023년 1.7%, 2024년 이후부터는 1.3%를 적용

20)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2023. 3.)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기관부담률	13.165%	13.251%	13.339%	13.428%	13.512%

21) 2025년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4,921,000원임

22)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R&D) 사업(1744-404)의 내역사업 중 과학기술 전문사관 모집 선발 및 교육훈련 과정 운영으로 4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 중 과학기술전문사관지원센터 운영비 2,600만원을 제외한 4억 44,700만원을 사업비로 가정함

23) 2024년 2.7%, 2025년 2.4%, 2026년 2.1%, 2027년 이후부터는 2.0%

[표 9] 사업비등: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사업비	468	478	487	497	507	2,437
기숙사비	—	—	473	483	492	1,448
합계	468	478	960	980	999	3,88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장학금등·건축비·인건비·사업비등의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 192억 7,4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563억 3,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장학금등	1,873	3,807	4,241	4,686	4,756	19,363
건축비등	16,508	14,615	—	—	—	31,123
인건비	425	379	384	388	390	1,966
사업비등	468	478	960	980	999	3,885
합 계	19,274	19,279	5,585	6,054	6,145	56,3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국방부와 한국과학기술원 간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실제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방식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24) 2023년 기준 기숙사 비용은 4억 3,200만원으로, 기숙사가 완공된 2027년부터 반영함(최대인원 학사 120명, 석사·박사 120명)

- 실제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입학정원 규모에 따라 장학금등·건축비·인건비등·사업비등의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최형수	오명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형수	02-6788-4667	jjaps@na.go.kr